규제영향분석서

관광진흥법 시행령

<목 차>

1. 관광안내업 신설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문화체육관광부	작성자	이름	한송희
	담당부서(과)	관광기반과		직급	행정주사
	국장	김현환		연락처	044-203-2840
	과장	최현승		이메일	van1770@korea.kr

정책책임자직위 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 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관광안내업 신설 및 등록요건 규정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라목, 별표 1 제1호의 라목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, 제5조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신설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2019.6.4.~7.13.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규제의 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○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대응하고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상품을 제공하는 ‘관광안내업’을 신설
-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 대비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활성화 도모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○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‘관광안내업 신설’
○관광안내업 등록요건 신설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○피규제자: 관광안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○이해관계자: 여행업자, 관광통역안내사, 국내여행안내사 등</td></tr>
<tr><td>9.규제목표</td><td colspan="3">관광안내업 진입규제를 낮춰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되, 기존 여행업자와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역 침해·갈등 소지 제거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규제의 적정성</td><td rowspan="2">10.영향평가 여부</td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기타</td><td>12.일몰설정 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13.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/table>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「관광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.	제2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----------.
1. 여행업의 종류	1. ----------
가. 일반여행업 :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[사증(査證)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]	가. 종합여행업 ----------
나. 국외여행업 :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(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	나. 국내외여행업 : 국내외를 여행하는----------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**라. 관광안내업 :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(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, 운송시설·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**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(제5조 관련) 1. 여행업 가. 일반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1억원 이상일 것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. 국외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3천만원 이상일 것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. 국내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1,500만원 이상일 것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<신설> 2. ~ 5. (생략)	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(제5조 관련) 1. 여행업 가. 종합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5천만원 이상일 것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. 국내외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3천만원 이상일 것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. 국내여행업 (1) 자본금(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 : 1,500만원 이상일 것 (2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라. 관광안내업 (1) 개인사업자 (가)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(나) 사업장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(2) 법인사업자 (가)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(나) 자본금 : 1,500만원 이상일 것 (다) 사무실 :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. ~ 5. (현행과 같음)

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○ 현행 여행업 규제는 단체관광 중심의 종합여행서비스 규제에 적합하여 최근 관광추세가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단품이나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

○ 이에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'관광안내업'을 신설하고, 진입규제를 기존 여행업 대비 대폭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○ 법적 근거

-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: 여행업 :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·숙박시설,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, 여행에 관한 안내,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
-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: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: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·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-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: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.

○ 여행자에게 여행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여야 함

-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여행업(자본금 1억원, 사무실),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(자본금 3천만원, 사무실),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국내여행업(자본금 1천5백만원, 사무실)을 등록

○ 개별여행객 중심으로 여행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운송수단이나 숙박 등의 알선 없이 개인의 취향이나 체험 요구에 맞는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기존 여행업 대비 진입규제를 완화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자 함

○ 기존의 여행업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루 일정 이내에 상품을 제공토록 하며 운송·숙박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 대리를 금지하되, 개인사업자는 등록요건 중 자본금을 없애고 자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아닌 사업장을 구비토록 하고 법인사업자는 국내여행업과 동일한 수준의 등록요건 규정(자본금 1천5백만원, 사무실)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○ 2018. 9월~2019. 3월: 여행업 제도 개선 TF 6회 운영

- 참석자: 한국관광공사, 한국문화관광연구원, 한국소비자원,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여행업협회,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
- 의견수렴 결과 반영: 기존의 여행업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역 침해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,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 도모

3. 규제목표

○ 기존 여행업 대비 진입규제가 완화된 업종 신설

○ 신설 업종의 업무범위와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○ 관광안내업 신설

- 목적: 개별여행객 중심으로 변화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대응
- 수단: 기존 여행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하루 일정 이내에 관광안내를 제공토록 하며 운송·숙박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 대리를

금지하는 업종 신설

☞ 개별여행객 여행 행태에 맞추되 기존 여행업계와 중복·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타당성을 갖춘 규제 설정

○ 관광안내업 등록요건 규정

- 목적: 신설 업종의 업무범위와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
- 수단: (개인사업자) 자본금 요건 면제, 자택 영업도 가능하도록 사무실이 아닌 사업장 구비

(법인사업자) 자본금 1,500만원, 사무실 구비

☞ 관광산업 활성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타당성을 갖춘 규제 설정

* 관광진흥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을 명시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① 규제 영역	창업
② 규제 방식	정보규제(신고: 등록의무)
③ 예비분석모델	예비분석표모델
판단 근거	규제 대상 집단이 단일업종 내에 있는 바, 단일업종에 대한 예비분석표 활용
④ 대상 업종	여행업
⑤ 예비분석내용	①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 ○ 기업 규모별 본포 및 규모별 매출액 - 전체 여행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비업 비율: 92.6% - 전체 여행업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: 49.3% -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: 12.1% ② 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: 3점

<table>
<tr><td></td><td>
<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 확인>
<table>
<tr><th>지표값</th><th>비율</th><th>차등화 점수</th></tr>
<tr><td>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비율</td><td>55% 미만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</td><td>40% 이상</td><td>0</td></tr>
<tr><td>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</td><td>30% 미만</td><td>0</td></tr>
</table>
③ 차등화 대상 결정: 차등화 불확실(△)
<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>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지표값 총점</td><td colspan="3">창업</td></tr>
<tr><td>신고</td><td>기준설정</td><td>허가</td></tr>
<tr><td>3</td><td>△</td><td>△</td><td>△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⑥ 차등화적용 여부</td><td>차등화 불확실(△)</td></tr>
</table>

o 기타 고려사항

- 일몰설정 여부: 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: 해당없음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의무 및 무등록 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

o 규제 차등화 방안: 해당없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행정적 집행가능성: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업 등록 등 관리중

o 재정적 집행가능성: 해당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○ 과거 한때 관광통역안내업이 허용되었으나, 다른 여행업종과 중복*, 여행대금 유용 및 여행객 사기 피해사례가 과다하여 폐지되었음('75.12월) * 안내 외에 숙박·교통 등을 알선하여 일반 여행업자의 업무영역을 침해

○ 최근 관광추세가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단품이나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단체여행객은 감소 추세에 있어 여행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대두

○ 18.9월부터 19.3월까지 6번에 걸쳐 "여행업 제도 개선 TF"를 운영하며 '관광안내업' 신설 및 기존 여행업 진입 규제 완화 결정

2. 향후 평가계획

○ 매년 실시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, 여행업 현황조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조치할 계획

3. 종합결론

○ 신설 '관광안내업'을 기존의 여행업종과 구분되도록 명확하게 정의하고 행정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